

의안 번호	2485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대상 :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 ※ 센터 위치는 수탁기관이 센터 공간을 자체 마련함에 따라 수탁기관에 따라 변동
- 위탁사무의 내용
  -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
  - 그 밖에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2025년 소요예산 : 3,445백만원 정도(국 2,314, 시1,061, 구70)

### 다. 근거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순정)

- 본 위탁 동의안은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 12. 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 동의를 받아
-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행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아이돌봄 지원센터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중구 광남17길 14(남외동, 1층)
- 규    모: 37.1㎡(11평)
- 운영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봄비(대표 오현석)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 종 사 자: 5명(팀장 1, 팀원 4) ※ 아이돌보미: 170명

**□ 주요 사업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센터인건비, 운영비,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교육비 지원

**□ 2025년 예산**

- 2025년 예산액 : 3,445,156천원(국 2,313,855 시 1,061,476 구 69,825)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445,156	2,313,855	1,061,476	69,825
운영비	258,131	180,692	77,439	0
사업비	3,047,375	2,133,163	914,212	0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5,250	0	2,625	2,625
아이돌보미 교통비	134,400	0	67,200	67,200

○ 위치도



# 근거법규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봄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봄미	법 제7조(아이돌봄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